
지방공기업법 개정 계획(안)

2017. 8.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1

지방공기업 사업 영역 · 범위 확대 (안 제2조)

□ 개정 사유

- 최근 지방공사는 대규모 임대주택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설립·운영 중
 - * 지방공사 리츠현황 : SH 3개, 인천도공 3개, 경기도공 2개 추진 중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용어 정의>

- ▶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명목회사(SPC의 일종)**로서, 상근 임직원이 없으므로 **실제 자산운용은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하여 수행하여야 함**
- ▶ **자산관리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 투자·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 리츠 자산운용(임대주택 시설관리 등)을 위해 지방공사는 별도 설립한 AMC나 민간 AMC에 업무를 위탁하나, 거래비용 등 비효율 발생
 - * (예시) SH공사가 임대주택리츠(1~3호) 설립하고 이를 자산관리회사(AMC)인 (주)서울투자운용(SH공사 지분 35.1% 보유)에 위탁, (주)서울투자운용은 실제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다시 SH공사 통합관리센터에 재위탁하는 구조로 낭비 발생
- 리츠를 통한 공공주택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절차간소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자산관리 업무를 지방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나,
 -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타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AMC의 수탁자산 운용 외 타 업무겸영이 금지되어 있음 (법 §22의3)
 - 지방공사가 AMC 겸영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상 자산관리업무 수행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 LH공사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겸업 가능
- 국정과제(79번)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조기 이행 지원
 -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매년 10조원 투입, LH·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주도 추진

□ 개정 내용

- 안 제2조제1항제7호 단서 추가를 통해 “부동산 자산관리사업”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p> <p>1. ~ 6. (생략)</p> <p>7. 주택사업</p> <p>8.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조(적용 범위) ① ----- ----- ----- ----- -----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주택사업(부동산 자산관리사업을 포함한다)</u></p> <p>8.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2 사회적 책임경영 원칙 신설 (안 제3조)

□ 개정 사유

- 지자체·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 및 이에 따른 제도정비·인식 제고 필요성 증대
-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원칙을 규정한 각 지자체 조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 신설의 법적 근거 마련
 - *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16. 6. 7. 제정)
 - ** 사회적가치 지표(30%) : 일자리 확대(12%), 윤리경영, 지역사회 공헌, 약자배려 등(18%)
- 정부 국정과제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12번 과제)' 및 실천과제 '국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적기 이행 도모

□ 개정 내용

- 지방공기업의 고객,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경영 의무화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② (생략) <신설>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의 고객, 지역사회 및 주민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방상하수도 가산금 부과 규정 신설 (안 제22조)

□ 개정 사유

- 현행 「지방공기업법」 상 상하수도 사용요금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은 있으나, 납부 연체에 따른 '가산금' 부과·징수 근거 규정은 미비
 - '가산금'은 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으로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시 법률의 위임규정 필요(지방자치법 제22조)
- * 현재 자치단체는 조례에 의거하여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가산금 부과에 대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없다는 법제처 해석례(12-0271)

□ 개정 내용

- 요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가산금 징수 주체를 요금 징수 주체와 동일하게 지자체로 규정
 - 일정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적용
- *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서 정한 가산금 요율(100분의 3) 범위 내 설정
- ** 현재 약 70%의 지자체가 조례로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3으로 규정

< 시행령 개정방향 >

- ▶ (기존) 행안부와 환경부가 정한 '표준급수조례'에 연체금을 일할계산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 지자체마다 운영방식이 상이
- ▶ (변경)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7조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연체 기간에 따라 가산금의 산정방식을 달리 규정
 - (1개월 이하) 미납요금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 (1개월 초과) 미납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가산금에 대하여도 지방세 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절차 준용

* 현행 지방공기업법 §22④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는 가산금 등과 같이 실제적 사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법제처 해석례 12-0271, 10-0446)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2조(요금) ① ~ ③ (생략)</p> <p><신설></p> <p>④ <u>요금의 징수에</u>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p>제22조(요금)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u>요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 요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u></p> <p>⑤ <u>요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u>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p>

4

임원의 결격사유 완화 (안 제60조)

□ 개정 사유

-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
 - 전문성·네트워크를 보유한 외국인 임원 채용을 허용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공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할 필요
- 국가·지방공무원,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없는 결격사유를 지방공사·공단에 두는 것은 불합리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출자·출연법」은 임원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未국적자’를 규정하지 않음

□ 개정 내용

- 공공기관 간 형평성 제고, 지방공기업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원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규정 삭제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 5. (생략) ②·③ (생략)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삭 제> 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개정 사유

- 지방공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공기업 200억·기초공기업 100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및 지방행정연구원에 의해 실시
- 국가 공공기관과 달리 타당성 검토 면제조항이 없고, 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 기준의 일률적 적용으로 각종 비효율 발생

- ① 타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시, 타 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경우에도 면제조항 부재로 중복 실시 → 적기 사업 지연
- ② 임대주택사업 등 공공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도 면제 조항 부재로 타당성 검토 의무 실시 → 사업 축소·무산 등 공공성 저해

- 지방공사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투자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사업 특성 및 성격을 고려한 타당성 검토 면제 사유 신설 필요

□ 개정 내용

- 사업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 검토 면제 사유 신설

- 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타 지방공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법령 상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을 실시하였거나 면제받은 사업
- ② 국민 안전과 직결되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재난 예방 사업 및 전액 국비지원 사업
- ③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전국적인 통일성·일관성을 갖춰 추진이 필요한 사업*

* 다만,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로 한정

- 타당성 검토가 제외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대한 '면제되는 사업의 내역 및 사유' 보고의무 명시
- 타당성 검토 면제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 (시행령 개정안) ① 공사는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으려는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사유 등을 명시한 면제요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면제 여부 결정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생략)</p> <p><u><신설></u></p>	<p>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및 의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u>1. 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u></p> <p><u>2.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단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u></p>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4. 2개 이상의 지방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어느 한 지방공사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받은 사업.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아니한 지방공사는 그 사업에 대하여 당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6.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7. 사업비 전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8.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전국적인 통일성·일관성에 따라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6

공사와 공단 간 조직변경 절차 개선 (안 제80조)

□ 개정 사유

- 청산 및 신규 설립 절차를 간소화(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공단 간 조직변경 규정 신설 ('15. 12월)
- 공사·공단의 법적 권리·의무 및 실제 운영 사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사 → 공단 및 공단 → 공사 전환 절차를 동일하게 규정
 - 특히 설립 타당성 검토를 회피하기 위해 공단 설립 후 공사로 전환하여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는 편법적 사례 발생
- 공기업 형태 변경 허용의 취지를 살리면서, 제도 악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망으로서, 공단→공사 전환 요건 추가 필요

	지방공사	지방공단
적용법률	지방공기업법, 상법(일부 준용)	지방공기업법
사업성격	공공성 > 수익성	공공성
설립	자치단체 단독 또는 민·관 공동 (민간 50% 미만)	자치단체 단독 (자치단체 100%)
경영비용	판매수입 및 대행수수료	대행사업비
손익금처리	가능	불가
자본조달	자치단체 또는 민간 증자, 자체 수입금, 공사채 발행	자치단체 증자, 공단체 발행
타법인출자	직전년도 자기자본금 10% 한도 내	타법인 출자 불가
업무관계	독립사업 경영, 특정사무 대행	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사무 대행

- 조직변경에 대한 의회 의결 시, 지자체 장의 '변경된 조직 설치·운영 관련 조례 제·개정안' 동시 부의 의무 명시 필요
 - 조직변경에 대한 의결과 변경 조례안 시행일을 일치케 하여, 이해관계자 통보(20일 이내) 및 등기 신청 만기일(3주 이내) 기산의 혼란 방지

